

2016-2017 경기규칙 개정 내용 비교표

현 행	개 정																								
(IAAF/KAAF 규칙) 2014-2015	(IAAF/KAAF 규칙) <i>2016-2017</i>																								
용어의 변경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width: 30%;">현 행</th>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60%;">변 경</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정스타트장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i>스타트정보장치</i></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니어</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i>U20</i></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i>U18</i></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소심판원 (Jury of Appeal)</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i>상소심판원단 (Jury of Appeal)</i></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참가 자격박탈</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i>참가 부적격 (또는 자격정지)</i></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선수생체여권 (ABP)</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i>선수생체수첩 (ABP)</i></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트랙 또는 로드 레이스</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부 적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i>러닝 (Running)으로 표시</i></td> </tr> </tbody> </table>	현 행		변 경	부정스타트장치	▶	<i>스타트정보장치</i>	주니어		<i>U20</i>	청소년		<i>U18</i>	상소심판원 (Jury of Appeal)		<i>상소심판원단 (Jury of Appeal)</i>	참가 자격박탈		<i>참가 부적격 (또는 자격정지)</i>	선수생체여권 (ABP)		<i>선수생체수첩 (ABP)</i>	트랙 또는 로드 레이스	일부 적용	<i>러닝 (Running)으로 표시</i>	
현 행		변 경																							
부정스타트장치	▶	<i>스타트정보장치</i>																							
주니어		<i>U20</i>																							
청소년		<i>U18</i>																							
상소심판원 (Jury of Appeal)		<i>상소심판원단 (Jury of Appeal)</i>																							
참가 자격박탈		<i>참가 부적격 (또는 자격정지)</i>																							
선수생체여권 (ABP)		<i>선수생체수첩 (ABP)</i>																							
트랙 또는 로드 레이스	일부 적용	<i>러닝 (Running)으로 표시</i>																							
제2장 선수 참가자격																									
제22조 국제 및 국내경기대회 참가 자격박탈 1.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사람들은 본 규칙이나 대륙 또는 회원연맹의 규칙에 의하여 개최되는 대회에서 부적격자가 된다. (a)...	제22조 국제 및 국내경기대회 참가 부적격(자격정지) 로 용어 순화 1.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사람들은 본 규칙이나 대륙 또는 회원연맹의 규칙에 의하여 개최되는 대회에서 부적격자가 된다. (a)... (f) <i>윤리분과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윤리강령 위반으로 윤리분과위원회로부터 부적격 및 자격정지 상태가 된 사람;</i> (g) <i>규칙 제23조에 명시된 행위의 결과로 부적격 선고를 받은 사람</i>																								

[규칙 제23조 새로 추가]

제23조 부적격 선언 대상자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모든 선수, 선수지원요원 또는 기타 요원은 본 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부적격 선언 대상이 된다.

- (a) 자격정지를 받은 회원연맹의 국가나 영토에서 개최되는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거나, 자격정지를 당하거나 부적격 선언을 받은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대회인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경기대회에 참가한 사람. 다만, 이는 (규칙 제141조에 의거하여) 마스터즈 연령 참가로 제한한 육상경기대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b) 규칙 제2조(육상경기대회 개최 승인)에 의거하여 승인되지 않은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사람;
- (c) 규칙 제4조(국제육상경기대회 참가 조건) 또는 이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d) 규칙 제5조(회원연맹을 대표할 자격) 또는 이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e) 규칙 제6조(선수에 대한 지불) 또는 이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f) 규칙 제7조(선수대리인) 또는 이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g) 규칙 제8조(국제경기대회 기간 중 광고 및 전시) 또는 이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h) (규칙 제60조 2항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들을 제외하고) 다른 어떠한 기타 규칙이라도 위반한 사람;

제3장 도핑방지 및 의무

[세계도핑방지규정(World Anti-Doping Code)의 개정 내용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제3장 도핑방지 및 의무 규정에 반영함.]

제3장 도핑방지 및 의무 [용어]에 새로 추가된 정의들 :

투여(Administration)

기타 관계자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시도를 함에 있어,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제공, 공급, 감독, 촉진, 또는 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진실 되고 합법적인 치료 목적 또는 기타 인정할만한 정당성을 위하여 사용된 금지약물 또는 금지 방법에 참여한 선의의 의료요원의 행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금지 약물이 진실하고 합법적인 치료목적이 아닌 것으로 전반적으로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기간 외 검사에서 금지되지 않는 금지약물이 관련된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다.

제3장 도핑방지 및 의무 [용어]에 새로 추가된 정의들 :

투여
비정상수첩결과
선수생체수첩
비정형수첩결과
경기대회 장소
경기대회 기간
도핑방지규칙위반의 결과조치
오염된 제품
과실
국제수준 선수
미성년자
공개발표 또는 공개보고
특정약물
엄격한 책임

비정상수첩결과(Adverse Passport Finding)

적용되는 도핑방지규정에서 설명하는 비정상수첩결과를 확인하는 보고를 말한다.

선수생체수첩(Athlete Biological Passport)

선수생체수첩운영지침서(및 기술문서)와 도핑방지규정에서 설명한 바대로 데이터를 수집 및 대조하는 프로그램 및 방법을 말한다.

비정형수첩결과(Atypical Passport Finding)

도핑방지규정에서 설명하는 비정형수첩결과로 파악된 보고를 말한다.

경기대회 장소(Competition Venues)

경기대회 주관단체에 의해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경기대회 기간(Competition Period)

경기대회 주관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대회의 개막에서부터 폐막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도핑방지규칙위반의 결과조치(Consequences of Anti-Doping Rule Violations - "Consequences")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도핑방지규칙위반이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a) 실효는 모든 메달, 득점, 상금 및 출전료의 몰수 등 모든 결과조치와 더불어 특정 종목이나 경기대회에서 선수가 받은 결과가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b) 자격정지(부적격)는 규칙 제40조 12항(a)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특정기간 동안 모든 경기, 활동, 재정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도핑방지규칙위반을 이유로 금지됨을 의미한다.
- g) 임시 자격정지는 규칙 제38조에 따라 시행된 청문회의 최종결정 전까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모든 경기 또는 활동에의 참가가 잠정적으로 금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 e) 공개발표 또는 공개보고는 규칙 제43조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조기통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 관계자를 넘어 일반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염된 제품(Contaminated Product)

합리적인 인터넷 검색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 또는 제품의 라벨에 밝히지 않은 금지약물을 포함한 제품을 말한다.

과실(Fault)

과실은 특정 상황에 적합한 의무 또는 주의부족을 말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제3장 도핑방지 및 의무 [용어]에 새로 추가된 정의들 :

투여
비정상수첩결과
선수생체수첩
비정형수첩결과
경기대회 장소
경기대회 기간
도핑방지규칙위반의 결과조치
오염된 제품
과실
국제수준 선수
미성년자
공개발표 또는 공개보고
특정약물
엄격한 책임

과실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예를 들어,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경험,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미성년자인지의 여부, 장애와 같은 특별 고려사항, 선수가 인지했던 위협의 정도 그리고 인지한 위협의 수준과 관련되어 선수가 행한 주의와 조사의 수준 등이다.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의 과실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구체적이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행동기준으로부터의 이탈을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선수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거나 선수의 경력 또는 시즌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규칙 제40조 6항 하에서 자격정지기간을 감경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관련 요소가 될 수 없다.

국제수준선수(International-Level Athlete)

IAAF에 의해 국제수준으로 인정된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규칙 제35조 9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를 뜻한다.

미성년자(Minor)

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한다.

공개발표 또는 공개보고(Publicly Disclose or Publicly Report)

위 도핑방지규칙의 위반에 대한 결과조치 참조

특정약물(Specified Substance)

규칙 제34조 5항 참조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

규칙 제32조 2항(a)와 (b) 하에서 선수 측의 고의, 과실, 부주의 또는 사용의 인지를 도핑방지규칙위반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한 규정을 말한다.

제4장 분쟁 및 징계절차

제60조 분쟁 (Disputes)

→ 분쟁 및 징계절차 (Disputes and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변경

* 도박 행위 위반이나 기타 부정부패 방지 위반을 IAAF 윤리분과위원회 소관으로 명시하는 것 외에 내용 상 주요한 변경 내용 없음

제5장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규칙

제110조
국제임원(International Officials)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제 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 (a) 조직대표
- (b) 기술대표
- (c) 의무대표
- (d) 도핑검사대표
- (e) 국제기술임원/국제크로스컨트리/로드레이스 및 산악레이스 임원
- (f) 국제경보경기심판원
- (g) 국제로드코스 계측원
- (h) 국제스타터
- (i) 국제사진판정심판원
- (j) 상소심판원

제110조
국제임원(International Officials)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국제 임원이 임명되어야 한다.

- (a) 조직대표
- (b) 기술대표
- (c) 의무대표
- (d) 도핑검사대표
- (e) 국제기술임원 / 국제크로스컨트리, 국제로드 *러닝*, 국제산악 *러닝* 및 국제트레일러닝 임원
- (f) 국제경보경기심판원
- (g) 국제로드코스 계측원
- (h) 국제스타터
- (i) 국제사진판정심판원
- (j) 상소심판원단

제115조
국제기술임원(ITOs)과 국제크로스컨트리,
로드레이스 및 산악레이스임원(ICROs) 및 국가기술임원(NTOs)

1. 기술대표는 사전에 관련 기관에 의해 ITO 주임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명된 국제기술임원(이하 ITO)중에서 한 명의 ITO 주임을 임명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ITO 주임은 프로그램의 각 종목마다 적어도 한 명의 ITO를 임명하여야 한다. ITO는 해당 종목 심판장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 본 연맹 및 전국연맹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에는 원칙적으로 NIO를 임명한다. NIO는 대회총무의 바로 다음에 위치하며, IAAF의 ITO와 ATO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제115조
국제기술임원(ITOs)과 국제크로스컨트리,
로드러닝, 산악러닝 및 트레일러닝 임원(ICROs) 및 국가기술임원(NTOs)

1. 기술대표는 사전에 관련 기관에 의해 ITO 주임이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명된 국제기술임원(이하 ITO)중에서 한 명의 ITO 주임을 임명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ITO 주임은 프로그램의 각 종목마다 적어도 한 명의 ITO를 임명하여야 한다. **각 ITO는 본인이 배정된 종목의 심판장이 된다.**

[주] 본 연맹 및 전국연맹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에는 원칙적으로 NIO를 임명한다. NIO는 대회총무의 바로 다음에 위치하며, IAAF의 ITO와 ATO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

제118조
국제스타터와 국제사진판정심판원
(International Starter and International Photo Finish Judge)

제118조
국제스타터와 국제사진판정심판원
(International Starter and International Photo Finish Judge)

<p>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장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경기대회와 국내경기대회에서 IAAF 또는 해당 대륙연맹은 국제스타터와 국제사진판정심판원을 임명한다.</p> <p>국제스타터는 기술대표가 할당한 경기종목의 스타트 업무(및 기타 임무도)를 수행해야 한다. 국제사진판정심판원은 모든 사진판정관련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p>	<p>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장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경기대회와 국내경기대회에서 IAAF, 해당 대륙연맹 또는 담당기관은 국제스타터와 국제사진판정심판원을 임명한다.</p> <p>국제스타터는 기술대표가 할당한 경기종목의 스타트 업무(및 기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제사진판정심판원은 모든 사진판정관련 업무를 감독하며 사진판정심판원주임직을 수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0조 경기대회임원(Officials of the Competition)</p> <p>경기임원 (Competition Officia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실심판장 : 1명(이상) - 트랙경기심판장 : 1명(이상) - 도약경기심판장 : 1명(이상) - 투척경기심판장 : 1명(이상) - 혼성경기심판장 : 1명(이상) - 로드레이스심판장 : 1명(국내대회시) - 경보경기심판장 : 1명(국내대회시) - 트랙경기심판원주임(1명) 및 심판원(약간명)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0조 경기대회임원(Officials of the Competition)</p> <p>경기임원 (Competition Official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실심판장 : 1명(이상) - 트랙경기심판장 : 1명(이상) - 필드경기심판장 : 1명(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약경기심판장 : 1명(국내대회시) • 투척경기심판장 : 1명(국내대회시) - 혼성경기심판장 : 1명(이상) - 경기장 외 종목 심판장 : 1명(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경기심판장 : 1명(국내대회시) • 로드레이스심판장 : 1명(국내대회시) - 비디오판독 심판장 : 1명(이상) - 트랙경기심판원주임(1명) 및 심판원(약간명)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5조 심판장(Referees)</p> <p>1. 소집실, 트랙경기, 필드경기, 혼성경기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개최되는 레이스 및 경보경기별로 적절하게 1명(또는 그 이상)의 심판장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트랙경기심판장과 경기장외 경기심판장은 경보경기심판원주임의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할권도 없다.</p> <p>2. 심판장은...</p>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5조 심판장(Referees)</p> <p>1. 소집실, 트랙경기, 필드경기, 혼성경기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개최되는 러닝 종목 및 경보경기 종목별로 적절하게 1명(또는 그 이상)의 심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1명(또는 그 이상)의 비디오판독심판장을 임명한다. 트랙경기심판장과 경기장외 종목 심판장은 경보경기심판원주임의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할권도 없다. 비디오판독심판장은 비디오판독실에서 근무하며 다른 심판장들과 소통한다.</p> <p>2. 심판장은...</p> <p>...</p> <p>[주:IAAF] 본 규칙과 기타 적용되는 규정(광고 규정을 포함)의 목적을 위해, 시상식은 모든 관련 활동(사진촬영, 우승 후 트랙을 한 바퀴 도는 victory lap,</p>

<p>3...</p> <p>4. 해당 심판장은 소집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포함한 경기 진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항의나 이의제기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p> <p>5. 심판장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위나 품위가 없는 행동을 한 선수에 대해 경고를 주거나 경기에서 퇴장시킬 권한이 있다. 경고는 노란색 카드로, 퇴장은 붉은색 카드를 보여서 선수에게 알린다. 경고와 퇴장은 경기결과 기록카드에 기입하고, 이 사항을 기록정보처리원과 다른 심판장들에게 전달해야 한다.</p>	<p><i>관중과의 교류 등이 완료되면 끝나게 된다.</i></p> <p>3...</p> <p>4. 해당 심판장은 경기 도중(준비운동장, 소집실 및 경기 후 시상식까지 포함한) 발생하는 모든 경기운영에 관련한 항의나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다.</p> <p>5. 심판장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위나 품위가 없는 행동 또는 규칙 제162조 5항의 명시된 행동을 한 선수에 대해 경고를 주거나 경기에서 퇴장시킬 권한이 있다. 경고는 노란색 카드로, 퇴장은 붉은색 카드를 보여서 선수에게 알린다. 경고와 퇴장은 경기결과 기록카드에 기입하고, 이 사항을 기록정보처리원과 다른 심판장들에게 전달해야 한다.</p> <p><i>[주1-IAAF] 상황이 정당할 때, 심판장은 선수에게 경고 없이 퇴장시킬 수 있다. (규칙 제144조 2항의 [주]를 참조)</i></p> <p><i>[주2-IAAF] 본 규칙에 의해 선수를 경기대회에서 퇴장시킬 때, 만약 심판장이 선수에게 노란색 카드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심판장은 두 번째로 노란색 카드를 보여준 다음 바로 붉은색 카드를 보여주어야 한다.</i></p> <p><i>[주3-IAAF] 만약 심판장이 이미 부과된 노란색 카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로 노란색 카드를 보여준다면, 이 사실이 인지되는 순간 바로 붉은색 카드와 동일한 결과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관련 심판장은 신속하게 선수 또는 그의 팀에게 퇴장 조치를 알려야 한다.</i></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7조 감찰원(트랙경기 및 경보경기) (Umpires-Running and Race Walking Events)</p> <p>4. 릴레이레이스의 테이크오버존을 감찰하기 위해 충분한 인원의 감찰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주1-IAAF] 선수가 자신의 레인을 이탈하여 다른 레인에서 달렸거나 릴레이 테이크오버가 테이크오버존 밖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감찰원은 즉시 위반행동이 일어난 트랙 지점에 적절한 물체로 표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7조 감찰원(러닝 및 경보경기 종목) (Umpires-Running and Race Walking Events)</p> <p>4. 릴레이레이스의 테이크오버존을 감찰하기 위해 충분한 인원의 감찰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주1-IAAF] 선수가 자신의 레인을 이탈하여 다른 레인에서 달렸거나 릴레이 테이크오버가 테이크오버존 밖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감찰원은 즉시 위반행동이 일어난 트랙 지점에 적절한 물체로 표시하거나 서면상 혹은 전자적 수단에 유사한 표시를 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2조 기록정보처리원(Competition Secretary) 및 기술정보센터(Technical Information Centre)</p> <p>1. 기록정보처리원은 심판장, 계시원주임 또는 사진판정심판원주임 및 풍속측정원이 제공한 각 종목의 전체 경기결과기록을 모두 수집하여야 한다. 기록정보처리원은 즉시 그 자료를 아나운서에게 전달하고 경기결과 기록카드를 경기본부장에게 전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2조 기록정보처리원(Competition Secretary) 및 기술정보센터(Technical Information Centre)</p> <p>1. 기록정보처리원은 심판장, 계시원주임 또는 사진판정심판원주임 또는 자동무선계시심판원주임 및 풍속측정원이 제공한 각 종목의 전체 경기결과기록을 모두 수집하여야 한다. 기록정보처리원은 즉시 그 자료를 아나운서에게 전달하고,</p>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각 필드경기장에 있는 전산기록원이 각 종목의 전체 경기결과가 전산에 입력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트랙경기 결과는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의 지시하에 입력한다. 아나운서와 경기본부장은 컴퓨터를 통해서 경기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세부항목 구성 및 새로운 항목 추가]

- 기술정보센터(IIC, Technical Information Centre)는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및 (g)에 명시된 경기대회에 설치하고, 2일 이상 개최되는 다른 대회에도 권장된다. IIC의 주요 기능은 기술 관련 사안과 대회와 관련된 기타 사안들에 각 팀의 대표, 조직위, 기술대표, 대회운영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주] 경기결과 기록카드는 본 연맹의 지정카드를 사용한다.

경기결과 기록카드를 경기본부장에게 전달한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각 필드경기장에 있는 전산기록원이 각 종목의 전체 경기결과가 전산에 입력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트랙경기 결과는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의 지시하에 입력한다. 아나운서와 경기본부장은 컴퓨터를 통해서 경기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 선수들이 각자 다른 사양기구 무게 또는 허들 높이와 같은)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종목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기록에 명확하게 표시되거나 각 항목마다 별도의 기록이 기재되어야 한다.
- 규칙 제1조 1항 (a) 외에 경기대회 규정이 다음과 같은 선수의 참가를 동시에 허용할 경우에는 기록을 별도로 기재하고,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등급도 표시해야 한다.
 - (a) 다른 사람의 조력으로 경기하는 경우 예. 가이드 러너(*guide runner*)
 - (b) 규칙 제144조 3항(c)에서 공인하지 않은 기계적 조력을 사용하는 선수
- 스타트리스트 및 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은 약어와 기호를 사용한다.

- 경기불참 - DNS
- 도중기권 - DNF
- 유효시기 기록되지 않음 - NM
- 실격 - DQ
-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 유효시기 - "O"
- 필드 종목에서 무효시기 - "X"
- 필드 종목에서 시기패스 - "—"
- 경기대회 퇴장 - r
- 트랙 종목에서 순위로 통과 - Q
- 트랙 종목에서 기록으로 통과 - q
- 필드 종목에서 기준기록달성으로 통과 - Q
- 필드 종목에서 기준기록달성 없이 통과 - q
- 심판장에 의해 다음 라운드로 진출 - qR
- 상소심판원단에 의해 다음 라운드로 진출 - qJ
- But knee (경보) - >
- Loss of contact (경보) - ~
- 노란색 카드 - YC
- 두 번째 노란색 카드 - YRC
- 붉은색 카드 - RC

- 기술정보센터(IIC, Technical Information Centre)는 규칙 제1조 1항 (a), (b), (c), (f) 및 (g)에 명시된 경기대회에 설치하고, 2일 이상 개최되는 다른 대회에도 권장된다. IIC의 주요 기능은 기술 관련 사안과 기타 대회 관련 사안들에 대한 각 팀, 조직위, 기술대표, 대회운영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주] 경기결과 기록카드는 본 연맹의 지정카드를 사용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136조 풍속 측정원(Wind Gauge Operator)</p> <p>풍속 측정원은 규칙 제163조 10항(트랙경기)과 제184조 11항(필드경기)에 따라 풍속측정계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풍속 측정원은 해당 경기종목의 달리는 방향의 풍속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 및 서명한 후 기록정보처리원에게 통보한다. [주] 풍속측정원은 경기진행중의 기상상황에 대해서도 측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6조 풍속 측정원(Wind Gauge Operator)</p> <p>풍속 측정원은 자신이 배정받은 경기종목의 달리는 방향의 풍속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 및 서명한 후 기록정보처리원에게 통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7조 과학계측심판원(Measurement Judge(Scientific))</p> <p>전자 또는 비디오 거리계측기 또는 기타 과학계측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1명(또는 그 이상)의 계측심판원을 임명한다. 경기시작 전, 계측심판원은 관련 기술자들을 만나고 장비 사용법을 익힌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7조 과학계측심판원(Measurement Judge(Scientific))</p> <p>1. 전자 또는 비디오 거리계측기 또는 기타 과학계측장비를 사용할 경우에 1명의 계측심판원주임과 1명 또는 그 이상의 보조원을 임명한다. 2. 경기시작 전, 과학계측심판원은 관련 기술자들을 만나고 장비 사용법을 익힌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1조 연령 및 성별 그룹(Age and Sex Categories)</p> <p>연령 그룹</p> <p>1. 이 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경기대회는 다음과 같은 연령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Youth) 남·여 : 경기 당해 연도 12월31일 현재 만16세 또는 17세 선수 • 주니어 남·여 : 경기 당해 연도 12월31일 현재 만18세 또는 19세 선수 • 마스터 남·여 : 만35세 생일에 도달한 선수 <p>...</p> <p>6...</p> <p>(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1조 연령 및 성별 그룹(Age and Sex Categories)</p> <p>연령 그룹</p> <p>1. 본 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경기대회는 다음과 같은 연령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18 남·여 : 경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만 16세 또는 17세가 되는 선수 • U-20 남·여 : 경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만 18세 또는 19세가 되는 선수 • 마스터 남·여 : 만35세 생일에 도달한 선수 <p>...</p> <p>6...</p> <p>(b)</p> <p>[주-IAAF] 규칙 제141조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규칙 제22조 2항을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2조 참가신청(Entries)</p> <p>...</p> <p>동시참가신청(Simultaneous Entries)</p> <p>3....</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2조 참가신청(Entries)</p> <p>...</p> <p>동시참가신청(Simultaneous Entries)</p> <p>3....</p> <p>[주-IAAF] 시기 라운드가 3회 초과인 경기대회에서, 심판장은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시기를 순서에 맞지 않게 이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전 라운드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3조 경기의복, 경기화 및 선수표(Clothing, Shoes and Athlete bibs)</p> <p>스파이크 규격(Dimensions of Spikes)</p> <p>4. 밑창이나 뒷굽에서 돌출된 스파이크 길이는 9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높이뛰기와 창던지기 경기에서는 12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스파이크는 끝에서부터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한 변이 4mm인 정사각형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p> <p>선수표(Athlete Bibs)</p> <p>...</p> <p>10.</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3조 경기의복, 경기화 및 선수표(Clothing, Shoes and Athlete bibs)</p> <p>스파이크 규격(Dimensions of Spikes)</p> <p>4. 밑창이나 뒷굽에서 돌출된 스파이크 길이는 9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높이뛰기와 창던지기 경기에서는 12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스파이크는 끝에서부터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한 변이 4mm인 정사각형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민약 트랙 제조사 또는 경기장 운영요원이 더 짧은 최대길이를 지시하면 이는 적용될 것이다. <i>[주-IAAF] 지면은 본 규칙이 허용하는 스파이크(규격)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i></p> <p>선수표(Athlete Bibs)</p> <p>...</p> <p>10.</p> <p>11. 민약 선수가 본 규칙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준수하지 않으며, 그리고; (a) 관련 심판장의 통솔을 준수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또는 (b) 경기대회에 참가 한다면, 그 선수는 실격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4조 선수에 대한 조력(Assistance to Athletes)</p> <p style="text-align: center;">(오른쪽과 같이 의료진단 및 조력 조항들 구성 및 내용 보완)</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4조 선수에 대한 조력(Assistance to Athletes)</p> <p>의료진단 및 조력(Medical Examination and Assistance)</p> <p>1. (a) 경기장소 내에서는 조직위원회가 임명하고 식별할 수 있는 완장, 조끼 또는 유사한 의류를 입은 공식 의료요원이 진단/치료 그리고/또는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경기장소 밖에서는 치료의 목적을 위해 의무대표 혹은 기술대표가 승인한 의료팀원이 진단/치료 그리고/또는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의료적 개입이 경기대회의 진행 또는 지정된 순서에 따른 선수의 시기를 지연시킬 수는 없다. 경기대회 직전이나, 선수가 소집실을 떠난 이후, 또는 경기 중에 이러한 서비스 또는 조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조력으로 간주된다.</p> <p>(b) 식별할 수 있는 완장, 조끼 또는 유사한 의류를 입은 의무대표 또는 공식의료팀의 의사가 선수에게 경기를 그만 둘 것을 지시한다면 선수는 이를 바로 준수해야 한다. <i>[주-IAAF] 보통 물리적인 장애물로 구분되는 경기구역은 본 규칙의 목적 하에 경기가 진행되고 해당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인가된 참가선수와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구분된다.</i></p> <p>2. 심판장은 경기 진행 중 경기장소 내에서 조력을 주거나 받는 선수에게 경고를 주어야 하며, 향후의 반복행위가 적발될 시 그 경기종목에서 실격된다는 주의를 구두로</p>

	<p>통보한다. 만약 선수가 (경고와 주의 이후 반복행위로 인해) 해당 경기종목에서 실격되었을 경우, 해당 경기종목의 동일 라운드에서 실격될 때까지 수립된 어떠한 기록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경기종목의 이전 라운드에서 수립된 기록은 인정된다.</p> <p>[주-IAAF] 규칙 제144조 3항(a)에 해당 되는 상황일 경우, 실격이 주의 없이 부과될 수 있다.</p> <p>3. ...</p> <p>(a) 선수가 모든 가능성/증거를 고려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기계적 조력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 선수보다 자신에게 전체적인 (경기 상의) 경쟁적 이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기계적 조력은 허용되지 않는다.</p> <p>(b) 경기대회 당시 본인의 특정 임무가 요구하거나 관련되지 않는 경기대회 임원이 제공하는 조언이나 기타 조언 (예 : 지도 조언, 수평도약에서 실격을 알려주는 경우를 제외한 도약종목에서의 발구를 지점을 알려주는 행위, 레이스에서 시간 또는 거리 차이를 알려주는 행위, 등등).</p> <p>4. ...</p> <p>(b) 규칙 제144조 1항에 의거하여 이미 경기장소에 들어선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거나 또는 계속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위 해 필요한 의료진단/처치 및/또는 물리치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5조 실격(Disqualification)</p> <p>만약 선수가 어느 종목에서 경기규칙 위반으로 실격되었을 경우, 공식 경기결과 기록표에 규칙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p> <p>2.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이나 품위가 없는 행동을 한 선수가 해당 종목에서 실격이 될 경우, 공식경기결과표에 실격 사항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p> <p>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이나 품위가 없는 행동을 한 선수가 실격이 될 경우, 선수는 심판장에 의해 혼성경기에서의 개별종목을 포함한 동일 경기대회의 향후 모든 종목으로부터 실격당할 수 있다. 만약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기본부장이 추가 징계 고려를 위해 해당 주관 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5조 실격(Disqualification)</p> <p>만약 선수가 어느 종목에서 경기규칙 위반으로 실격되었을 경우, 공식 경기결과 기록표에 규칙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p> <p>2.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이나 품위가 없는 행동을 한 선수가 해당 종목에서 실격이 될 경우, 공식경기결과표에 실격 사항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p> <p>...</p> <p>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이나 품위가 없는 행동으로 인해, 또는 규칙 제162조 5항에 따라 선수가 한 종목에서 실격이 될 경우, 심판장은 동일한 경기대회의 향후 모든 종목(혼성경기에서의 개별종목 또는 그가 동시에 참가하고 있는 기타 종목 및 릴레이를 포함하여)에서 해당 선수를 실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선수의 (모욕적)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기본부장이 선수에 대한 추가적 징계를 위해 해당 주관 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6조 항의 및 상소(Protests and Appeals)</p>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6조 항의 및 상소(Protests and Appeals)</p> <p>...</p>

<p>7... [주-IAAF] 항의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해당 심판장은 즉시 판결시각을 TIC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심판장이 판결사항을 관련 팀/선수(들)에게 구두로 전달할 수 없었다면, TIC에서 그러한 판결을 게시하는 시간이 공식발표 시간이 된다.</p> <p>[주] 국내경기대회에서의 상소는 소속팀의 책임자가 예탁금 50,000원을 첨부하여 대회본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상소는 즉결되며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p>	<p>7... [주-IAAF] 항의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 해당 심판장은 즉시 판결시각을 TIC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심판장이 판결사항을 관련팀/선수(들)에게 구두로 전달할 수 없었다면, TIC에서 수정된 결과 또는 그러한 판결을 게시하는 시간이 곧 공식발표 시간이 된다.</p> <p>[주] 국내경기대회에서의 상소는 소속팀의 책임자가 미화 100달러에 상응하는 한 화를 첨부하여 대회본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상소는 즉결되며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7조 남녀 혼합경기(Mixed Competition)</p> <p>육상경기장 내에서...</p> <p>[주-IAAF] 필드 경기에서 남녀 혼합경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성별로 대한 경기결과 기록표를 사용하고, 그 경기결과는 각 성별로 별도로 발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47조 남녀 혼합경기(Mixed Competition)</p> <p>육상경기장 내에서...</p> <p>[주-IAAF] 필드 종목의 남녀 혼합경기의 경우, 각 성별로 별개의 경기결과 기록표를 사용할 것이며, 경기결과는 각 성별로 발표될 것이다. 레이스의 경우, 각 선수의 성별이 결과기록표에 기재되어야 한다.</p> <p>[주2-IAAF] 본 규칙이 허용하는 트랙 종목의 남녀 혼합경기는 오직 성별을 분리하여 진행하기에는 남녀 어느 한쪽의 성별 또는 양쪽 성별 모두의 참가 선수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p> <p>[주3-IAAF] 본 규칙이 허용하는 트랙 종목의 남녀 혼합경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쪽 성별의 선수가 다른 성별의 선수로부터 페이스 조력이나 기타 조력을 받기위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0조 트랙 측정(Track Measurements)</p> <p>1. 표준 트랙의 길이는 400m이다. 트랙은 두 개의 평행 직선주로와 반지름이 동일한 두 개의 곡선주로로 구성된다. 트랙의 안쪽에 높이 약 5cm, 너비 최소 5cm이상과 적절한 재료로 만든 연석으로 경계선을 만들고 흰색으로 칠한다. 두 개 직선주로의 연석은 생략될 수 있으며, 연석은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p> <p>...</p> <p>6. 트랙의 너비 쪽 최대 허용경사한도는 너비쪽으로 100분의 1(1%) 달리는 방향쪽으로서의 경사는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0조 트랙 측정(Track Measurements)</p> <p>1. 표준 트랙의 길이는 400m이다. 트랙은 두 개의 평행 직선주로와 반지름이 동일한 두 개의 곡선주로로 구성된다. 트랙의 안쪽에 높이 5m - 6.5m 사이, 너비 5m - 25m 사이의 적절한 재료로 만든 연석으로 경계선을 만들고 흰색으로 칠한다. 두 개 직선주로의 연석은 생략될 수 있으며, 연석은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p> <p>...</p> <p>6. 트랙의 너비 쪽 최대 허용경사한도는 100분의 1(1%) (IAAF에서 허용하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달리는 방향으로의 전체적인 내리막 경사는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2조 스타트(The Start)</p> <p>1... [주2-IAAF] 1,500m 스타트라인은 바깥쪽 곡선레인선부터 동일한 합성 표면으로 된 범위까지 확장 할 수 있다.</p> <p>...</p> <p>7. 혼성경기를 제외하고, 1회의 부정스타트를 한 책임이 있는 선수는 어느 선수든지 실격된다. 혼성경기에서는 첫 번째 부정스타트를 한 선수는 경고를 받으며, 각 레이스마다 단 한 번만의 부정스타트는 부정스타트에 책임있는 선수(들)가 실격되지 않고 허용된다. 같은 레이스에서 그 후에 부정스타트를 한 책임있는 선수는 실격된다(규칙 제200조 8항(c)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2조 스타트(The Start)</p> <p>1... [주2-IAAF]1,500m 스타트라인 또는 기타 곡선 스타트라인은 바깥쪽 곡선레인선부터 동일한 합성 표면으로 된 범위까지 확장 할 수 있다.</p> <p>...</p> <p>7. 혼성경기를 제외하고, 1회의 부정스타트를 한 책임이 있는 선수는 어느 선수든지 실격된다. 혼성경기는 규칙 제200조 8항(c)를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3조 레이스(The Race)</p> <p>1. 타원형 트랙 위에서 레이스와 같은 방향은 왼손이 트랙 안쪽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레인은 달리는 방향에 대하여 왼쪽(안쪽)에서부터 제 1레인으로 하고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한다.</p> <p>...</p> <p>5. 국내경기대회(국제경기대회는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의 800m 레이스는 선수가 자기의 레인을 벗어나는 브레이크라인(breakline)의 가까운 가장자리를 지날 때까지 자기의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브레이크라인은 제1레인 이외의 모든 레인을 가로지르는 너비 5cm의 첫 곡선주로의 끝에 표시된 원호형 라인(arcued line)이다. 선수들이 브레이크라인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각 레인 라인과 브레이크라인의 교차점 바로 전, 레인라인 위에 가급적 브레이크라인과 레인라인과는 다른 색의, 높이 15cm이하의 5cm x 5cm 작은 콘(cones)이나 각주(角柱, prisms)를 세워 놓는다. [주-IAAF] 국제친선대항경기대회(matches)에서는 참가국들의 합의로 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p> <p>체크마크(Check-Marks)</p> <p>7. 전부 또는 첫 부분이 레인에서 실시되는 릴레이레이스를 제외하고, 선수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트랙 위나 트랙 옆에 체크마크를 표시하거나 표지물을 둘 수 없다.</p>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3조 레이스(The Race)</p> <p>1. 최소 1개의 곡주로를 포함하는 레이스의 경우, 걷거나 달리는 방향은 왼손이 트랙 안쪽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레인은 달리는 방향에 대하여 왼쪽(안쪽)에서부터 제 1레인으로 하고 차례대로 번호를 부여한다.</p> <p>...</p> <p>5. 국내경기대회(국제경기대회는 IAA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경기대회)의 800m 레이스는 선수가 자기의 레인을 벗어나는 브레이크라인(breakline)의 가까운 가장자리를 지날 때까지 자기의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브레이크라인은 제1레인 이외의 모든 레인을 가로지르는 너비 5cm의 첫 곡선주로의 끝에 표시된 원호형 라인(arcued line)이다. 선수들이 브레이크라인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각 레인 라인과 브레이크라인의 교차점 바로 전, 레인라인 위에 가급적 브레이크라인과 레인라인과는 다른 색의, 높이 15cm이하의 5cm x 5cm 작은 콘(cones)이나 각주(角柱, prisms)를 세워 놓는다. 만약 선수가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는 (릴레이의 경우는 그의 팀이) 실격될 것이다. [주-IAAF] 규칙 제170조 4항(c) 및 제171조 1항(c)에 해당되는 국제친선대항경기대회(matches)에서는 참가국들의 합의로 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p> <p>체크마크(Check-Marks)</p> <p>7. 규칙 제170조 4항에 명시된 경우와 같이 전부 또는 첫 부분이 레인에서 실시되는 릴레이레이스를 제외하고, 선수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트랙 위나 트랙 옆에 체크마크를 표시하거나 표지물을 둘 수 없다.</p>

<p>풍속측정(Wind Measurement)</p> <p>...</p> <p>10. 트랙종목을 위한 풍속 측정계는 제1레인에 인접한 직선주로 옆에 피니시 라인으로부터 50m 시점에 설치하고, 높이는 1.22m로 하며 트랙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p> <p>...</p> <p>13..</p> <p>...</p> <p><i>(14항 구간통과기록의 표시, 15항 음료수/스펀지 조항 추가)</i></p>	<p>풍속측정(Wind Measurement)</p> <p>...</p> <p>10. 트랙경기심판장은 트랙종목을 위한 풍속 측정계가 제1레인에 인접한 직선주로 옆에 피니시 라인으로부터 50m 떨어진 지점에 확실히 설치되도록 한다. 높이는 1.22m로 하며 트랙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p> <p>...</p> <p>13..</p> <p>...</p> <p>구간통과기록의 표시(Indication of Intermediate Times)</p> <p>14. 구간통과기록과 우승예상시간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그 외에는</p> <p>...</p> <p>본 규칙을 위배하여 구간통과기록을 전달받은 선수들은 조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본 규칙 제144조 2항 적용의 대상이 된다.</p> <p>음료수/스펀지(Drinking / Sponging)</p> <p>15. (a) 5000m 또는..</p> <p>(b) 10,000m를 초과하는... 선수가 준비한 음식물은 선수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제출되는 시점부터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임원들의 감독 하에 보관되어야 한다.이 임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음식물이 변형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5조</p> <p style="text-align: center;">계시 및 사진판정(Timing and Photo Finish)</p> <p>1. 공식 계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승인된다.</p> <p>(a) 수동계시(H.T.);</p> <p>(b) 사진판독장치에 의한 완전자동계시(F.A.T.);</p> <p>(c) 규칙 제230조(경기장 내에서 완전히 실시되지 않는 레이스), 제240조와 (로드레이스) —제250조(크로스컨트리레이스)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사용된 자동무선계시장치(transponder system)에 의한 계시</p> <p>2. 계시는 선수의 신체 부분이(즉 머리, 목, 팔, 다리, 손, 발과 구별한 동체) 스타트라인과 가까운 쪽 끝의 피니시 라인의 수직면에 닿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계측한다.</p> <p>...</p> <p>6. 2개 이상의 시간을 계시할 수 있는 시계를 사용하는 임명된 수동 계시팀 요원 또는 추가 계시원들이 규칙 제165조 3항에 따라 주회시간과 구간통과시간을 기록</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5조</p> <p style="text-align: center;">계시 및 사진판정(Timing and Photo Finish)</p> <p>1. 공식 계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승인된다.</p> <p>(a) 수동계시(H.T.);</p> <p>(b) 사진판독장치에 의한 완전자동계시(F.A.T.);</p> <p>(c) 규칙 제230조(경기장 내에서 완전히 실시되지 않는 레이스), 제240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 사용된 자동무선계시장치(transponder system)에 의한 계시</p> <p>2. 규칙 제165조 1항 (a)와 (b)에 의거하여 계시는 선수의 신체 부분이(즉 머리, 목, 팔, 다리, 손, 발과 구별한 동체) 스타트라인과 가까운 쪽 피니시 라인 가장자리의 수직면에 닿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계측한다.</p> <p>...</p> <p>6. 규칙 제165조 3항에 해당하는 주회시간과 구간통과시간은 2개 이상의 시간을 계시할 수 있는 시계를 사용하는 임명된 수동 계시팀 요원, 또는 예비 계시원들, 또는</p>

<p>한다.</p> <p>...</p> <p>8. 3명의 공식계시원 (이중 1명은 계시원주임)과 1~2명의 예비 계시원이 모든 종목의 1위를 계시한다. (혼성경기의 경우...</p> <p>...</p> <p>15. 카메라의 정확한 정렬을 확인하고 사진판독 영상의 용이한 판독을 위하여, 라인 라인들과 피니시라인의 교차지점은 적절한 모양으로 검은색을 칠해야 한다. 이 디자인은 교차지점에만 국한되어야 하는데, 피니시라인의 앞쪽 가장자리보다 앞으로 나와서도 아니 되며 2cm를 초과해서 넘어서도 안 된다. <i>(내용 추가)</i></p> <p>...</p> <p>17. 장치는 각 선수의 피니시 시간을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야하며 모든 선수들의 기록을 나타내는 사진을 인화할 수 있어야 한다. <i>(내용 추가)</i></p> <p>...</p> <p>19.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사진판정장치의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경기 시작 전에 관련 기술진과 만나서 <i>(내용 추가)</i> 사진 판독장치를 익힌다.</p> <p>...</p> <p>25. 자동무선계시장치 심판원주임은 자동무선계시장치의 기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자동무선계시장치주임은 경기대회 시작 전에 관계된 기술임원과 협의하여 장치조정에 익숙해야한다. 장비 테스트를 감독하고, 피니시 라인 통과 동시에 이 장치가 통과할 때 선수의 피니시 기록이 기록되는지를 점검한다. 그는 심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 제165조 24항(f)의 적용이 보장을 위한 대책을 확인하여야 한다.</p>	<p><i>자동무선계시장치에 의해 기록된다.</i></p> <p>...</p> <p>8. 3명의 공식계시원 (이중 1명은 계시원주임)과 1~2명의 예비 계시원이 모든 종목의 1위 및 기록을 위한 모든 결과를 계시한다. (혼성경기의 경우...</p> <p>...</p> <p>15. 카메라의 정확한 정렬을 확인하고 사진판독 영상의 용이한 판독을 위하여, 라인 라인들과 피니시라인의 교차지점은 적절한 모양으로 검은색을 칠해야 한다. 이 디자인은 교차지점에만 국한되어야 하는데, 피니시라인의 앞쪽 가장자리보다 앞으로 나와서도 안 되며 2cm를 초과해서 넘어서도 안 된다. <i>판독의 용이성을 위해 유사한 검은색 마크가 라인라인과 피니시라인의 교차지점 각 측면에 위치할 수도 있다.</i></p> <p>...</p> <p>17. 장치는 선수의 피니시 시간을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해야하며 모든 선수들의 기록을 나타내는 사진을 인화할 수 있어야 한다. <i>추가적으로, 장치는 각 선수의 기록을 보여주는 결과표를 제공할 것이다. 자동적으로 기록된 값 그리고 수동적으로 입력된 값(예 : 스타트시간, 피니시시간)의 차후 변경은 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과표와 인쇄된 사진의 시간비율로 표기될 것이다.</i></p> <p>...</p> <p>19.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사진판정장치의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진판정심판원주임은 경기 시작 전에 관련 기술진과 만나서 <i>장치조정에 따른 모든 설정 사항들을 확인하고 사진 판독장치를 숙달한다.</i></p> <p>...</p> <p>25. 자동무선계시장치 심판원주임은 자동무선계시장치의 기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자동무선계시장치주임은 경기대회 시작 전에 <i>관련 기술진과 만나서 장치조정에 따른 설정 사항들을 확인하고 숙달해야 한다.</i> 장비 테스트를 감독하고, <i>자동무선계시장치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시에 선수의 피니시 시간을 기록하는지를 확인한다.</i> 그는 심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 제165조 24항(f)의 <i>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i></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6조 트랙경기에서의 조편성, 추첨 및 예선전 (Seedlings, Draws and Qualification in Track Events)</p> <p><i>(단일라운드 조항 순서 바꿈)</i></p> <p>...</p> <p><i>(6 조항 추가)</i></p>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6조 트랙경기에서의 조편성, 추첨 및 예선전 (Seedlings, Draws and Qualification in Track Events)</p> <p><i>단일라운드(Single Runt)</i></p> <p>...</p> <p>6. 특정 경기대회에서 라운드와 결승경기 대신 연속적인 레이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경기대회의 규정에 조편성 및 추첨 그리고 결승 경기결과를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고려사항들을 제시해야 한다.</p> <p>...</p>

<p>(다음 라운드 진출 - Progression 조항 새로이 구성) (기존 조항) 6. (내용 추가) 모든 예선라운드에서는 적어도 각 조의 1, 2위 선수들을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거나, 가능하면 각 조의 3위까지를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는 것을 권장한다.</p>	<p>다음 라운드 진출 (Progression) 8. 규칙 제166조 2항이 허용하는 조편성 기준표에 제공되지 않는 이상 모든 예선라운드에서는 적어도 각 조의 1, 2위 선수들을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거나, 가능하면 각 조의 3위까지를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키는 것을 권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8조 허들 레이스(Hurdle Races)</p> <p>...</p> <p>2. 허들은 금속 또는 기타의 적당한 재질로 만들고 상단 바는 목재나 기타의 적당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p> <p>...</p> <p>6. 모든 레이스는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규칙 제163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레인에서만 달려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8조 허들 레이스(Hurdle Races)</p> <p>...</p> <p>2. 허들은 금속 또는 기타의 적당한 재질로 만들고 상단 바는 목재나 기타의 적당한 비금속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p> <p>...</p> <p>6. 모든 레이스는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규칙 제163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레인에서만 허들을 넘으며 달려야 한다. 또한, 만약 선수가 다른 레인에 있는 허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넘어뜨린다거나 뚜렷하게 이동시킨다면 실격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9조 장애물 레이스(Steeplechase Races)</p> <p>...</p> <p>7. 각 선수는 물웅덩이를 뛰어넘거나 통과해야 하고, 각 허들을 뛰어 넘어야 한다. 이를 실패할 경우 실격처리가 된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실격처리가 된다 :</p>	<p style="text-align: center;">제169조 장애물 레이스(Steeplechase Races)</p> <p>...</p> <p>7. 각 선수는 물웅덩이를 뛰어넘거나 통과해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각 허들을 넘어야 한다. 이를 실패할 경우 실격처리가 된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실격처리가 된다 :</p>
<p style="text-align: center;">제170조 릴레이레이스(Relay Races)</p> <p>1. 릴레이레이스의 표준 거리는 다음과 같다 : 4x100m, 4x200m, 100m-200m-300m-400m 메들리 릴레이 (Medley Relay), 4x400m, 4x800m, 4x1500m.</p> <p>...</p> <p>6. (a) 배턴은 선수가 레이스 동안 계속 손에 쥐고 운반하여야 한다.</p>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170조 릴레이레이스(Relay Races)</p> <p>1. 릴레이레이스의 표준 거리는 다음과 같다 : 4x100m, 4x200m, 100m-200m-300m-400m 메들리 릴레이 (Medley Relay), 4x400m, 4x800m, 1200m-400m-800m-1600m 디스턴스 메들리 릴레이 (Distance Medley Relay), 4x1500m.</p> <p>...</p> <p>6. (a) 배턴은 경기장에서 열리는 릴레이레이스에서 사용되며 선수가 레이스 동안 계속 손에 쥐고 운반하여야 한다. 적어도 규칙 제1조 1항(a), (b), (c) 그리고 (f)에 해당되는 경기대회에서는, 각 배턴에 숫자를 표기하여야 하고, 각각 색깔이 다르도록 한다. 배턴에 자동무선계시장치가 포함될 수도 있다. [주-IAAF] 가능하다면, 각 레인 또는 스타트 순서의 위치에 따라 배턴의 색깔을 배정하고 이를 스타트리스트에 표기하여야 한다.</p> <p>...</p>

<p>8. 배턴을 받기 전과 그리고/또는 넘겨준 후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코스가 비어있을 때까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자신의 레인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본 규칙 제163조 3항 및 4항은 이 선수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자신의 구간 끝부분에서 (배턴을 넘겨준 후) 자신의 위치나 레인을 이탈하여 다른 팀의 선수를 코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그 선수의 팀은 실격된다.</p> <p>9. 배턴을 받는 선수를 떠밀어 주거나 기타 방법으로 도움을 준 경우는 실격된다.</p> <p>...</p> <p>11. 릴레이레이스에서 팀의 편성 및 주자 순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해당 경기 각 라운드 제1조의 첫 번째 소집시각 1시간 전까지 공식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후의 변경을 하려면 대회조직위원회가 임명한 의무담당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해당 팀의 경기가 있는 조의 최종 소집시각 전까지만이 변경이 가능하다. 팀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된다.</p> <p>...</p> <p>17. 4x1500m 레이스에서는 레인을 사용하지 않는다.</p> <p>...</p> <p>19. 메들리레이스, 4x400m, 4x800m, 4x1500m 레이스의 최후의 테이크오버에서 선수들은 테이크오버존 밖에서 레이스를 시작할 수 없고, 존 내에서 스타트하여야 한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수의 팀은 실격된다.</p>	<p>8. 배턴을 받기 전과 그리고/또는 넘겨준 후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코스가 비어있을 때까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자신의 레인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본 규칙 제163조 3항 및 4항은 이 선수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선수가 자신의 구간 끝부분에서 (배턴을 넘겨준 후) 자신의 위치나 레인을 이탈하여 다른 팀의 선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규칙 제163조 2항이 적용된다.</p> <p>9. 만약 레이스 중 선수가 상대 팀의 배턴을 가지고 가거나 좁는다면, 그의 팀은 실격된다. 다른 팀은 이득을 얻지 않는 이상 실격되지 않는다.</p> <p>...</p> <p>11. 릴레이레이스에서 팀의 편성 및 주자 순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해당 경기 각 라운드 제1조의 첫 번째 소집시각 1시간 전까지 공식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후의 변경을 하려면 대회조직위원회가 임명한 의무담당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해당 팀의 경기가 있는 조의 최종 소집시각 전까지만이 변경이 가능하다. 팀은 신고한 주자 순서대로만 경기할 수 있다. 팀이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된다.</p> <p>...</p> <p>17. 디스턴스 메들리 릴레이 레이스 및 4x1500m 레이스에서는 레인을 사용하지 않는다.</p> <p>...</p> <p>19. 메들리릴레이의 마지막 테이크오버와 4x400m, 4x800m, 디스턴스메들리릴레이, 4x1500m 레이스의 모든 테이크오버에서 선수들은 테이크오버존 밖에서 레이스를 시작할 수 없고, 존 내에서 스타트하여야 한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수의 팀은 실격된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제180조 총칙(General Conditions) - 필드경기</p> <p>...</p> <p>3. (b) ... <i>[주석 추가]</i> <i>(c) 조항 추가</i></p> <p>기록마커(Performance Markers)</p> <p>4. (a) 조항으로 구성 - 현 세계기록 및 (필요할 시에는) 현 대륙기록 또는 한국기록 또는 대회기록을 표시하기 위해 뚜렷하게 구별되는 기나 마커를 설치할 수 있다.</p>
--

<p style="text-align: center;">제180조 총칙(General Conditions) - 필드경기</p> <p>...</p> <p>3. (b) ... <i>[주-IAAF] 각 마커는 오직 단일 제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i> <i>(c) 장대높이뛰기의 경우, 조직위원회는 적절하고 안전한 거리 마커를 도움닫기주로 옆에 설치하는데, 이는 다음의 간격을 따른다. 0m 지점을 기준으로 :</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m지점부터 5m 지점까지는 0.5m 간격으로, • 5m지점부터 18m 지점까지는 1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p>기록마커 및 풍향계 (Performance Markers and Wind Socks)</p> <p>4. (a) 현 세계기록 및 (필요할 시에는) 현 대륙기록 또는 한국기록 또는 대회기록을 표시하기 위해 뚜렷하게 구별되는 기나 마커를 설치할 수 있다.</p>

(b) 조항 새로이 추가

...

시기의 기록(Recording of Trials)

- 7. 시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한다.
 - (a)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하고, 유효시기는 계측결과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에서는 “O”라는 기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b) 무효 시기는 “X”라는 기호로 표기한다.
 - (c) 선수가 시기를 포기(“패스”)하는 경우, “—”라는 기호로 표기한다.

[자격예선경기 : 예선 라운드 (Qualifying Competition : Preliminary Round) 조항들 구성]

...

- 14. [내용 재구성] 결승경기에 참가할 선수기 규칙 제 180조 12항에 정의된 결승경기의 인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 예선경기에서 3회 연속 무효시기를 하지 않은 선수는 규칙 제181조 2항에 따라 예선 통과 기준으로 정해진 높이에서 최종 시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경기를 하여야 한다.

...

방해(Obstruction)

- 17. 어떠한 이유로도 선수가 시기 중에 방해를 받은 경우, 심판장은 그 선수에게 재시기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A. 수직도약 경기(Vertical Jumps)

제181조

총칙(General Conditions)

- 1.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원주임은 최초의 높이와 우승이 결정되어 선수 1명만이 남을 때까지 또는 1위 동기록의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각 라운드의 시기종료 후에 계속해서 올리는 바의 높이를 선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크로스바(Crossbar)

- 7. ...
크로스바는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원형막대기와 지주의 바깥에 없기

(b) 모든 도약종목과 원반 및 창던지기 경기에서는 선수에게 대략적인 풍향과 풍속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1개 이상의 풍향계를 설치한다.

...

시기의 기록(Recording of Trials)

- 7.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를 제외하고, 유효시기는 계측결과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이 외의 경우에서 사용되는 표준 약어와 기호는 제132조 4항을 참고한다.

자격예선경기 : 예선 라운드 (Qualifying Competition : Preliminary Round)

...

- 14. 높이뛰기와 장대높이뛰기 자격예선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제180조 12항에 정의된 결승경기의 인원 수만큼 기준기록을 통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회 연속 무효시기를 하지 않은 선수에 한해서 규칙 제181조 2항에 따라 예선 통과 기준으로 정해진 높이의 최종 시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경기를 하여야 한다. 선수의 결승경기 진출이 확정되면 그는 더 이상 예선경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

...

재시기 (Substitute Trials)

- 17. 어떠한 이유로도 선수가 시기 중에 방해를 받은 경우 또는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못할 경우, 심판장은 그 선수에게 재시기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시기 순서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각각의 특정 상황에 맞추어 재시기를 위한 합리적인 시간이 허용될 것이다. 재시기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경기가 진행된 경우, 재시기는 다음 시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행되어야 한다.

A. 수직도약 경기(Vertical Jumps)

제181조

총칙(General Conditions)

- 1.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판원주임은 최초의 바 높이와, 우승이 결정되어 선수 1명만이 남거나 동기록이 있어 1위 결정경기를 하기 전까지 각 라운드의 시기종료 후에 올리는 바의 높이를 선수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혼성경기의 경우 제200조8항(d) 참조)

...

크로스바(Crossbar)

- 7. ...
크로스바는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원형막대기와 지주의 바깥에 없기

<p>위한 너비 33~35mm, 길이 15~20cm의 양쪽 끝부분 2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2조 높이뛰기(High Jump)</p> <p>...</p> <p>2.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는 무효시기가 된다.</p> <p>...</p> <p><i>(c) 조항 새로이 추가</i></p> <p>...</p> <p>도움닫기주로와 발구름 장소(Runway and Take-off Area)</p> <p>3. 도움닫기주로의 최소길이는 15m로 하며, 규칙 제1조 1항(a), (b), (c), (e) 및 (f)에 준하여 개최되는 경기대회에서는 최소 20m가 되어야 한다. 조건이 가능하더라도, 최소 25m이상으로 한다. <i>[도움닫기 최소 길이 및 폭 수정]</i></p>	<p>위한 너비 30~35mm, 길이 15~20cm의 양쪽 끝부분 2개.</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2조 높이뛰기(High Jump)</p> <p>...</p> <p>2. 다음과 같은 경우 선수는 무효시기가 된다.</p> <p>...</p> <p><i>(c) 선수가 도움닫기를 하면서 도약하지 않았을 때 지주의 수직면 또는 크로스바와 접촉이 있을 경우.</i></p> <p>...</p> <p>도움닫기주로와 발구름 장소(Runway and Take-off Area)</p> <p>3. 도움닫기주로의 최소 폭은 16m 최소 길이는 15m로 하며, 규칙 제1조 1항(a), (b), (c), (e) 및 (f)에 준하여 개최되는 경기대회에서는 최소 길이가 25m가 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3조 장대높이뛰기(Pole Vault)</p> <p>경기(Competition)</p> <p>1. ...</p> <p>[주-IAAF] 장대높이뛰기 박스의 뒷끝과 수평이 되고 도움닫기주로의 중심선과 직각으로 너비 1cm의 선을 착지장소와 구별할 수 있는 색깔로 그려야 한다. ("0"선, zero line). 이와 유사한 선은 착지장소 표면에도 나타나며, 지주의 바깥쪽 가장자리까지 연장되어야 한다.</p> <p>도움닫기주로(Runway)</p> <p>6. ...</p> <p>7. 도움닫기주로의 측면 최대경사는 100분의 1(1%), 그리고 후반 40m의 도움닫기 방향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3조 장대높이뛰기(Pole Vault)</p> <p>경기(Competition)</p> <p>1. ...</p> <p>[주-IAAF] 장대높이뛰기 박스의 뒷끝과 수평이 되고 도움닫기주로의 중심선과 직각으로 너비 1cm의 선을 착지장소와 구별할 수 있는 색깔로 그려야 한다. ("0"선, zero line). <i>너비 5m까지의</i> 이와 유사한 선은 착지장소 표면에도 나타나며, 지주의 바깥쪽 가장자리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i>선의 가장자리(도움닫기를 하는 선수와 가까운 쪽)는 박스의 후방 가장자리와 일치해야 한다.</i></p> <p>도움닫기주로(Runway)</p> <p>6. ...</p> <p>7. 도움닫기주로의 측면 최대경사는 <i>(이)에 대해 IAAF에서 허용하는 특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i> 100분의 1(1%)이어야 하며 마지막 40m 구간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도움닫기를 하는 방향으로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 수평도약경기(Horizontal Jumps)</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4조 총칙(General Conditions)</p>	<p style="text-align: center;">B. 수평도약경기(Horizontal Jumps)</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4조 총칙(General Conditions)</p>

<p>도움닫기주로(Runway)</p> <p>1. ...</p> <p>2. 도움닫기주로의 측면 최대경사는 100분의 1(1%)이어야 하며, 도움닫기주로의 최후 40m 구간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도움닫기 방향으로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p> <p>풍속측정(Wind Measurement)</p> <p>10. 풍속은 발구름선으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거리(떨리뛰기 : 40m, 세단뛰기 : 35m)와 도움닫기주로 옆에 설치된 마크를 선수가 통과한 순간부터 5초 동안 측정한다. 만약 선수가 40m 또는 35m보다 짧은 거리의 도움닫기를 할 경우에는 도움닫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풍속을 측정한다.</p> <p>11. 풍속측정계는 발구름선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높이는 1.22m로 하며, 도움닫기주로에서 2m 이내로 떨어져 설치한다.</p>	<p>도움닫기주로(Runway)</p> <p>1. ...</p> <p>2. 도움닫기주로의 측면 최대경사는 <i>(이에 대해 IAAF에서 허용하는 특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i> 100분의 1(1%)이어야 하며, 도움닫기주로의 마지막 40m 구간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도움닫기를 하는 방향으로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p> <p>풍속측정(Wind Measurement)</p> <p>10. <i>풍속측정계는 규칙 제163조 8항 및 9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규칙 제163조 11항과 184조 12항의 작동 방법을 따르며, 규칙 제163조 13항의 측정법을 따른다.</i></p> <p>11. 담당 <i>필드(국내·도약)경기심판장</i>은 풍속측정계가 발구름선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 <i>확실히 설치되도록 한다</i> 높이는 1.22m로 하며, 도움닫기주로에서 2m 이내로 떨어져 설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C. 투척경기(Throwing Events)</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7조</p> <p style="text-align: center;">총칙(General Conditions)</p> <p>창던지기 도움닫기주로(Javelin Throw Runway)</p> <p>9. ...</p> <p>도움닫기주로는 4m 간격을 두고 평행을 이루는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표시한다. 투척은 반지름 8m 서클의 원호(圓弧) 뒤쪽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원호는 너비 7cm의 선으로 페인트로 칠하거나 목재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부식하지 않는 재료로 만든다. 원호는 백색이어야 하며 지면과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선은 도움닫기주로를 표시하는 2개의 평행선과 직각이 되는 원호의 양쪽 끝에서부터 그려진다. 이 선은 백색이어야 하며, 길이 75cm와 너비 7cm이어야 한다. 도움닫기주로의 최대 측면경사도는 100분의 1(1%), 그리고 도움닫기 방향으로 후반 20m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C. 투척경기(Throwing Events)</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7조</p> <p style="text-align: center;">총칙(General Conditions)</p> <p>창던지기 도움닫기주로(Javelin Throw Runway)</p> <p>9. ...</p> <p>도움닫기주로는 4m 간격을 두고 평행을 이루는 너비 5cm의 흰색라인으로 표시한다. 투척은 반지름 8m 서클의 원호(圓弧) 뒤쪽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원호는 너비 최소 7cm의 선으로 페인트로 칠하거나 목재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부식하지 않는 재료로 만든다. 원호는 백색이어야 하며 지면과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선은 도움닫기주로를 표시하는 2개의 평행선과 직각이 되는 원호의 양쪽 끝에서부터 그려진다. 이 선은 백색이어야 하며, 길이 75cm와 너비 최소 7cm이어야 한다. 도움닫기주로의 최대 측면경사도는 <i>(이에 대해 IAAF에서 허용하는 특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i> 100분의 1(1%), 그리고 도움닫기 방향으로 후반 20m의 전체 내리막 경사도는 1000분의 1(0.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8조</p> <p style="text-align: center;">포환던지기(Shot Put)</p> <p>3. 스톱보드의 너비는 11.2cm~30cm이고, 서클과 동일한 반지름의 호(弧arc)의 현(弦chord)은 길이가 1.21m±0.01m이며, 높이는 서클 안의 수평면과 비교하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88조</p> <p style="text-align: center;">포환던지기(Shot Put)</p> <p>3. 스톱보드의 너비는 11.2cm~30cm이고, 서클과 동일한 반지름의 호(弧arc)의 현(弦chord)은 길이가 1.21m±0.01m이며, 높이는 스톱보드 옆 서클 안의 수평면과</p>

10cm±0.2cm가 높다.

제193조
창던지기(Javelin Throw)

8. 창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창	여 자		남 자			
	청소년	여중/여고 주니어/일반	남 중	청소년	남고 주니어/일반	
경기허가 및 기록공인 최소중량 (손잡이 끈 포함)	500g	600g	600g	700g	800g	
제조업체정보 경기용구 공급범위	505g	605g	605g	705g	805g	
	525g	625g	625g	725g	825g	
전체길이	최소	2.000m	2.200m	2.300m	2.600m	
	최대	2.100m	2.300m	2.300m	2.400m	2.700m
금속제축 끝부터 중심(重心)까지의 길이	최소	0.780m	0.800m	0.860m	0.900m	
	최대	0.880m	0.920m	0.920m	1.000m	1.060m
뒷끝(꼬리)에서부터 중심(重心)까지의 길이	최소	1.120m	1.280m	1.300m	1.540m	
	최대	1.320m	1.500m	1.500m	1.540m	1.800m
금속제두부 길이	최소	220mm	250mm	250mm	250mm	
	최대	270mm	330mm	330mm	330mm	330mm
손잡이의 너비	최소	135mm	140mm	140mm	150mm	150mm
	최대	145mm	150mm	150mm	160mm	160mm
가장 짧은 부분의 창자루 지름(DO)	최소	20mm	20mm	23mm	25mm	
	최대	24mm	25mm	28mm	30mm	

비교하여 10cm±0.8mm가 높다.

제193조
창던지기(Javelin Throw)

8. 창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창	여 자		남 자			
	여중/ U18	여고/U20 일반	남 중	U18	남고 U20/일반	
경기허가 및 기록공인 최소중량 (손잡이 끈 포함)	500g	600g	600g	700g	800g	
제조업체정보 경기용구 공급범위	505g	605g	605g	705g	805g	
	525g	625g	625g	725g	825g	
전체길이	최소	2.000m	2.200m	2.300m	2.600m	
	최대	2.100m	2.300m	2.300m	2.400m	2.700m
금속제축 끝부터 중심(重心)까지의 길이	최소	0.780m	0.800m	0.860m	0.900m	
	최대	0.880m	0.920m	0.920m	1.000m	1.060m
뒷끝(꼬리)에서부터 중심(重心)까지의 길이	최소	1.120m	1.280m	1.300m	1.540m	
	최대	1.320m	1.500m	1.500m	1.540m	1.800m
금속제두부 길이	최소	220mm	250mm	250mm	250mm	
	최대	270mm	330mm	330mm	330mm	330mm
손잡이의 너비	최소	135mm	140mm	140mm	150mm	150mm
	최대	145mm	150mm	150mm	160mm	160mm
가장 짧은 부분의 창자루 지름(DO)	최소	20mm	20mm	23mm	25mm	
	최대	24mm	25mm	25mm	28mm	30mm

* 여중의 창 규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한다.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규격인 600g으로 시행한다.

제200조
혼성경기(Combined Events Competitions)

8. ...

[d) 조항 추가]

...

[동순위(Ties) 조항으로 구성]

12. 어느 순위에서 2명 이상의 선수가 동점을 취득했을 경우, 동순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

(d) 만약 규칙 제200조 12항(c)의 적용 후에도 동순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동순위로 결정된다.

제200조
혼성경기(Combined Events Competitions)

8.

(d) 수직도약경기에서는, 크로스바를 높이는 간격이 경기대회 동안 균일해야 한다 - 높이뛰기는 3m, 장대높이뛰기는 10m

...

동순위(Ties)

12. 어느 순위에서 2명 이상의 선수가 동점을 취득했을 경우, 동순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

(d) 만약 규칙 제200조 12항(c)의 적용 후에도 동순위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는 동순위로 결정된다.

<p><i>[주석 추가]</i></p>	<p><i>[주IAAF] 3명 이상의 선수들이 동순위일 경우에는 규칙 제200조 12항(a)가 적용되지 않는다.</i></p>
<p style="text-align: center;">제210조 실내경기에 적용되는 실외경기 규칙 (Applicability of Outdoor Rules to Indoor Competitions)</p> <p>제6장의 규칙에 명시된 예외사항들을 제외하고, 규칙 제1장부터 5장까지의 실외경기 규칙은 실내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10조 실내경기에 적용되는 실외경기 규칙 (Applicability of Outdoor Rules to Indoor Competitions)</p> <p>제6장의 규칙에 명시된 예외사항 그리고 규칙 제163조 및 제184조에 명시된 풍속측정 요구사항과 함께, 규칙 제1장부터 5장까지의 실외경기 규칙은 실내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13조 타원형 트랙 및 레인(The Oval Track and Lanes)</p> <p>1. ...흰색라인 또는 연석의 안쪽 가장자리는 트랙 전체 길이 동안 수평이 되어야 하고 최대경사는 1000분의 1(0.1%)이다. <i>[내용 추가]</i></p>	<p style="text-align: center;">제213조 타원형 트랙 및 레인(The Oval Track and Lanes)</p> <p>1. ...흰색라인 또는 연석의 안쪽 가장자리는 트랙 전체 길이 동안 수평이 되어야 하고 최대경사는 1000분의 1(0.1%)이다. 직선주로 옆의 연석이 없을 경우에는 5m 너비의 흰색라인으로 대체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14조 타원형 트랙에서의 스타트와 피니시 (Start and Finish on the Oval Track)</p> <p>레이스 운영(Conduct of the Races) <i>[세부항목들로 구성 및 내용 일부 변경]</i></p> <p>6. 400m 이하 레이스의 스타트는 개별레인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00m 이하의 레이스는 경기 내내 개별레인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300m를 초과하고 800m 미만의 레이스는 스타트에서 두 번째 곡주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브레이크라인까지 개별레인에서 달려야한다. 800m 레이스에서는 각 선수가 개별레인을 사용하거나 각 레인 당 최대 2명의 선수를 배정하거나, 또는 가급적이면 제1레인과 제3레인에서 시작하는 그룹스타트를 행한다. 이런 경우, 첫 곡주로 끝에 표시된 브레이크라인 이후에서만 선수들은 그들의 레인을 떠나거나 바깥쪽 그룹에서 달리는 선수들은 안쪽 그룹에 합류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14조 타원형 트랙에서의 스타트와 피니시 (Start and Finish on the Oval Track)</p> <p>레이스 운영(Conduct of the Races)</p> <p>6. (a) 300m 이하의 레이스는 개별레인에서만 실시하여야 한다. (b) 300m를 초과하고 800m 미만의 레이스는 스타트에서 두 번째 곡주로가 끝나는 지점에 있는 브레이크라인까지 개별레인에서 달려야한다. (c) 800m 레이스에서는 각 선수가 개별레인을 사용하거나 각 레인 당 최대 2명의 선수를 배정하거나, 또는 가급적이면 1레인과 4레인에서 시작하는 그룹스타트를 행한다. 이러한 경우, 첫 번째 곡주로 끝에 표시된 브레이크라인, 또는 2개의 곡주로를 레인에서 달리는 경우 두 번째 곡주로 끝에 표시된 브레이크라인 이후에서만 선수들은 그들의 레인을 떠나거나 바깥쪽 그룹에서 달리는 선수들은 안쪽 그룹에 합류 할 수 있다. (d) 800m를 초과하는 레이스는 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이크형스타트라인을 사용하거나 그룹스타트로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그룹스타트로 시작한다면, 브레이크라인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곡주로 끝에 위치할 것이다. 만약 선수가 본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는 실격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17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217조</p>

허들 레이스(Hurdle Races)

...

2. 레이스용 허들의 규격과 배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남 자			여 자	
	청소년	주니어	일반	청소년	주니어 / 일반
허들 높이	0.914m	0.991m	1.067m	0.762m	0.838m
레이스 거리	50m / 60m				
허들 수	4 / 5				
스타트라인 ~ 제1허들까지	13.72m			13.00m	
허들간의 거리	9.14m			8.50m	
최후허들 ~ 피니시라인까지	8.86m / 9.72m			11.50m / 13.00m	

허들 레이스(Hurdle Races)

...

2. 레이스용 허들의 규격과 배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남 자			여 자	
	U18/ 남중	U20	일반	U18/ 여중	일반/U20/ 여고
허들 높이	0.914m	0.991m	1.067m	0.762m	0.838m
레이스 거리	50m / 60m				
허들 수	4 / 5				
스타트라인 ~ 제1허들까지	13.72m			13.00m	
허들간의 거리	9.14m			8.50m	
최후허들 ~ 피니시라인까지	8.86m / 9.72m			11.50m / 13.00m	

**제218조
릴레이레이스(Relay Races)**

레이스 운영(Conduct of the Races)

- 4x200m 릴레이레이스에서는 모든 제1 구간과 제2 구간의 첫 번째 곡주로부터 규칙 제214조 6항에 명시된 브레이크라인의 가까운 가장자리까지 자신의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규칙 170조 18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선수들이 테이크오버존 밖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존(zone) 안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 4x400m 릴레이레이스의 경우, 처음 두 곡주로는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브레이크라인과 스크래치라인 등은 개인 400m 레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 4x800m 릴레이레이스의 경우, 첫 번째 곡주로는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브레이크라인과 스크래치라인 등은 개인 800m 레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제218조
릴레이레이스(Relay Races)**

레이스 운영(Conduct of the Races)

- 4x200m 릴레이레이스에서는 모든 제1 구간과 제2 구간의 첫 번째 곡주로부터 규칙 제214조 6항에 명시된 브레이크라인의 가까운 가장자리까지 자신의 레인에서 달려야 한다. 규칙 170조 18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선수들이 테이크오버존 밖에서 달리기 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존(zone) 안에서 스타트하여야 한다.
 - 4x400m 릴레이레이스는 **규칙 제214조 6항(b)를 따라 진행한다.**
 - 4x800m 릴레이레이스는 **규칙 제214조 6항(c)를 따라 진행한다.**
- ...

**제222조
포환던지기(Shot Put)**

- 포환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남녀 각 초/중 부별 규격 추가]**

**제222조
포환던지기(Shot Put)**

- 포환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포 환	여 자		남 자			
	청소년	여고 주니어/ 일반	청소년	남고/ 주니어	일반	
경기허가 및 기록공인 최소무게	3.000 kg	4.000 kg	5.000 kg	6.000 kg	7.260 kg	
제조업체 정보 : 경기용구 공급범위	3.005 kg	4.005 kg	5.005 kg	6.005 kg	7.265 kg	
	3.025 kg	4.025 kg	5.025 kg	6.025 kg	7.285 kg	
지름	최 소	85mm	95mm	100mm	105mm	110mm
	최 대	120mm	130mm	135mm	140mm	145mm

포 환	여 자		남 자					
	여초/여중 U18	여고 U20/일반	남초	남중	U18	남고/U20	일반	
경기허가 및 기록공인 최소무게	3.000 kg	4.000 kg	3.000 kg	4.000 kg	5.000 kg	6.000 kg	7.260 kg	
제조업체 정보 : 경기용구 공급범위	3.005 kg	4.005 kg	3.005 kg	4.005 kg	5.005 kg	6.005 kg	7.265 kg	
	3.025 kg	4.025 kg	3.025 kg	4.025 kg	5.025 kg	6.025 kg	7.285 kg	
직경	최 소	85mm	95mm	85mm	95mm	100mm	105mm	110mm
	최 대	120mm	130mm	120mm	130mm	135mm	140mm	145mm

제230조
경보경기(Race Walking)

2 ...

(f) IAAF 규칙 제1조 1항(a)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동일 국가의 심판원이 1명을 초과해서(2명 이상)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

실격(Disqualification)

6. (a) 동일한 선수에 대해서 심판원 주임이 3명의 다른 심판으로부터 붉은색 카드를 3번 받으면, 해당 선수는 실격이 되며, 심판원주임 또는 심판원주임보조원은 해당 선수에게 붉은색 표지판을 보여줌으로써 실격사실을 통보한다.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격된 선수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b) 규칙 제1조 1항 (a), (b), (c) 또는 (e)에서 명시하는 경기대회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국적의 심판원 2명의 붉은색 카드는 선수를 실격시킬 권한이 없다.

...

[피트레인 규칙 새로이 도입 - (c) 조항]

...

(c) 트랙경보경기의 경우, 실격된 선수는 즉시 트랙을 떠나야 하며, 로드경보경기일 경우, 실격된 선수는 실격된 직후 자신의 선수표를 뎀 후

제230조
경보경기(Race Walking)

3 ...

(f) IAAF 규칙 제1조 1항(a)에 명시된 경기대회에서는 **(심판원 주임을 제외하고)** 동일 국가의 심판원이 1명을 초과해서(2명 이상)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

실격(Disqualification)

7. (a) **규칙 제230조 7항(c)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선수에 대해서 심판원 주임이 3명의 다른 심판으로부터 붉은색 카드를 3번 받으면, 해당 선수는 실격이 되며, 심판원주임 또는 심판원주임보조원은 해당 선수에게 붉은색 표지판을 보여줌으로써 실격사실을 통보한다.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격된 선수의 복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b) 규칙 제1조 1항 (a), (b), (c) 또는 (e)에서 명시하는 경기대회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국적의 심판원 2명의 붉은색 카드는 선수를 실격시킬 권한이 없다.

(c) **피트레인(Pit Lane)은 경기대회의 적용되는 규정이 (피트레인을) 허용하는 레이스에서 사용될 것이며, 주체기관 또는 조직위원회가 허용한 기타 레이스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선수가 붉은색 카드 3장을 받고 심판원주임 또는 그가 위임한 심판원으로부터 피트레인으로 입장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선수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조직위원회가 결정한) 대기시간 동안 피트레인에 들어가서 대기한다. 선수가 어떠한 시점에서든, 이전 3장의 붉은색 카드를 부여하지 않은 심판원으로부터 추가적인 붉은색 카드를 받는다면 실격된다. 심판원주임은 피트레인 입장이 요구되었을 때 이를 불이행하거나 정해진 대기시간 만큼 피트레인에서 대기하지 않는 선수를 실격시킨다.**

(d) 트랙경보경기의 경우, 실격된 선수는 즉시 트랙을 떠나야 하며, 로드경보경기일 경우, 실격된 선수는 실격된 직후 자신의 선수표를 뎀 후

<p>코스를 떠나야 한다. 실격된 선수가 로드코스 또는 트랙을 떠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IAAF 규칙 제60조 4항 (f) 및 제145조 2항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가 따른다.</p> <p>로드경기의 음료수/스펀지 및 음식물 공급소 (Drinking/Sponging and Refreshment Stations in Road Events)</p> <p>9. ...</p> <p>(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어느 한 경우에 국가별로 최대 2명의 임원까지 음식물 테이블 뒤에 대기할 수 있다. 선수가 음식물 또는 물을 섭취하는 동안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들 임원이 해당 선수 옆에서 따라 달려서는 안 된다.</p> <p>레이스 진행(Race Conduct)</p> <p>11. 20km 이상의 경보경기에서 선수는 임원의 허가와 감독 하에 로드 또는 트랙을 벗어날 수 있다. 단, 그러한 코스 이탈로 인해 경기거리가 단축되어서는 안 된다.</p>	<p>코스를 떠나야 한다. 실격된 선수가 로드코스 또는 트랙을 떠나지 않거나 규칙 제230조 7항(f)에 따라 피트레인에 입장하여 요구되는 대기시간을 지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IAAF 규칙 제145조 2항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p> <p>로드경기의 음료수/스펀지 및 음식물 공급소 (Drinking/Sponging and Refreshment Stations in Road Events)</p> <p>10. ...</p> <p>(f) 규칙 제1조 1항 (a), (b), (c) 및 (f)에 명시된 모든 경기대회에서는 어느 한 경우에 국가별로 최대 2명의 임원까지 음식물 테이블 뒤에 대기할 수 있다. 선수가 음식물 또는 물을 섭취하는 동안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들 임원이 해당 선수 옆에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p> <p>레이스 진행(Race Conduct)</p> <p>12. 20km 이상의 경보경기에서 선수는 임원의 허가와 감독 하에 표기된 코스를 벗어날 수 있다. 단, 그러한 코스 이탈로 인해 경기거리가 단축되어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40조 로드레이스(Road Races)</p> <p>음료수/스펀지 및 음식물 공급소(Drinking/Sponging and Refreshment Stations)</p> <p>8. ...</p> <p>(c) 대회조직위원회는 음식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역을 지면에 마킹이나 테이블, 장벽을 활용해 표시해야 한다. 이 구역이 계획된 코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음식물은 선수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거나 공인된 인원이 선수의 손으로 건네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인원은 지정된 구역 안에 머물러야 하며 코스에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원 또는 공인된 인원이 선수가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는 동안 그의 옆에서 달려가서는 안 된다.</p> <p>레이스 진행(Race Conduct)</p> <p>9. 로드레이스에서는 임원의 허가와 감독 하에 선수가 로드 또는 트랙을 벗어날 수 있다. 단, 이러한 코스 이탈로 인해 경기거리가 단축되어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40조 로드레이스(Road Races)</p> <p>음료수/스펀지 및 음식물 공급소(Drinking/Sponging and Refreshment Stations)</p> <p>8. ...</p> <p>(c) 대회조직위원회는 음식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역을 지면에 마킹이나 테이블, 장벽을 활용해 표시해야 한다. 이 구역이 계획된 코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음식물은 선수의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배치하거나 공인된 인원이 선수의 손으로 건네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인원은 지정된 구역 안에 머물러야 하며 코스에 진입하거나 다른 선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임원 또는 공인된 인원이 선수가 음식물이나 물을 섭취하는 동안 그의 옆에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p> <p>레이스 진행(Race Conduct)</p> <p>9. 로드레이스에서는 임원의 허가와 감독 하에 선수가 표기된 코스를 벗어날 수 있다. 단, 이러한 코스 이탈로 인해 경기거리가 단축되어서는 안 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크로스컨트리 및 산악 레이스 (Cross-Country and Mountain Races)</p> <p>크로스컨트리레이스 및 산악 레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 실시되기</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크로스컨트리, 산악 및 트레일 레이스 (Cross-Country, Mountain and Trail Races)</p> <p>크로스컨트리레이스, 산악레이스 및 트레일레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조건에서</p>

때문에 국제 표준화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대회 성공여부는 흔히 장소의 자연적인 특성과 코스설계자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 규칙은 크로스컨트리 레이스 및 산악 레이스의 발달을 원하는 국가를 위한 지침과 동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시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렵다. 대회의 성공여부는 흔히 장소의 자연적인 특성과 코스설계자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다음 규칙은 크로스컨트리러닝, 산악러닝 및 트레일 러닝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회원연맹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50조
크로스컨트리레이스(Cross-Country Races)

거리(Distances)

5. IAAF 세계크로스컨트리선수권대회에서의 레이스 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남자	12km
주니어 남자	8km
여자	8km
주니어 여자	6km

제250조
크로스컨트리레이스(Cross-Country Races)

거리(Distances)

4. IAAF 세계크로스컨트리선수권대회에서의 레이스 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남자	10km
U20 남자	8km
여자	10km
U20 여자	6km

[트레일 레이스 규칙 새로이 도입]

제252조
트레일레이스(Trail Races)

코스(Course)

1. (a) 트레일레이스는 트인 지대(예 : 산, 사막, 숲 또는 평원)의 자연 환경 내의 주로 비포장인 다양한 지형(비포장 도로, 숲길 그리고 단일트랙 오솔길 포함)에서 실시한다.

(b) 자갈지면 또는 콘크리트 구간은 허용되지만,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레이스 총 거리의 20%를 넘으면 안 된다. 거리나 오르막 또는 내리막 고도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 및 한계는 없다.

(c) 레이스 전, 조직위는 사전에 계측한 코스의 거리와 총 내리막/오르막 경사도를 공표하고, 코스에 대한 상세 정보 및 레이스 동안 마주칠 (기술적) 난관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d) 코스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지역의 지형을 묘사해야 한다.

(e) 선수가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선수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코스 내에 표기하도록 한다.

기구(Equipment)

2. (a) 트레일러닝은 특정 테크닉 또는 특정 기구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b) 다만, 주최측은 레이스 중 예상되거나 대면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선수들이 의무적으로 안전 기구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선수가 위험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사고 시 신호를 보내고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c) 비상용 담요, 호루라기, 물 그리고 예비 식량은 선수가 소지해야할 최소의 요소들이다.

(d) 주최측이 특별히 허용할 경우 선수는 등산지팡이와 같은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다.

스타트(The Start)

3. 레이스는 스타트 신호총을 발사하여 시작된다. 400m를 초과하는 레이스에 대한 구령(규칙 제162조 2항**(b)**)을 사용한다. 많은 인원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레이스에서는 레이스 스타트 5분전, 3분전, 1분전에 스타트 예고를 한다.

안 전(Safety)

4. 주최측은 선수와 임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험에 처해있는 선수들과 기타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포함한 의료, 안전 및 구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원 공급소(Aid Stations)

5. 트레일레이스는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각 선수는 의복, 통신, 음식 그리고 음료와 관련하여 지원 공급소간 구간에서는 자주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지원 공급소들은 주최측의 계획에 의해 선수의 자주성을 존중하지만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된다.

레이스 진행(Race Conduct)

6. 심판장이 심판원이나 감찰원 또는 그 이외의 보고에 대하여 선수가 표시된 코스에서 이탈하여 경기거리가 단축되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선수는 실격이 된다.

7. 조력은 오직 지원 공급소에서만 제공된다.

8. 각 트레일레이스의 주최측은 선수의 처벌과 실격을 초래하는 상황을 명시한 구체적인 규정을 공표한다.

제260조
세계기록과 한국기록(World Records and Korean Records)

[조항 순서 변경 및 내용 개정]

8. IAAF가 공인하는 세계기록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a) 세계기록
- (b) 세계주니어기록
- (c) 세계실내기록
- (d) 세계실내주니어기록

[주석 추가]

...

2. 세계기록을 수립한 선수는 IAAF 규칙 하에 경기 참가자격이 있어야 하며, IAAF 소속 회원연맹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

[세부항목 구성 및 새로운 항목 추가]

제260조
세계기록과 한국기록(World Records and Korean Records)

...

2. IAAF가 공인하는 세계기록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a) 세계 기록
- (b) 세계 U20 기록**
- (c) 세계 실내 기록
- (d) 세계 실내 U20 기록**

[주1-IAAF] 본 규칙의 적용을 위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세계기록은 본 규칙 하의 모든 범주에 예속된다.

[주2-IAAF] 상기 규칙 260조 2항 (a)의 세계기록은 규칙 260조 12항과 13항에 준하는 (경기대회) 시설에서 달성된 모든 공인된 최고 기록을 인정한다.

3. 세계기록을 수립한 선수(및 릴레이 종목 선수들)는 :

- (a) IAAF 규칙 하에 경기 참가자격이 있어야 하며,
- (b) IAAF 소속 회원연맹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하며,
- (c) **규칙 제260조 2항(b) 또는 (d)하에 제출된 기록의 경우, 선수의 생년월일이 IAAF에 의해 사전에 확인되지 않았다면 여권, 출생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공식 문서로 생년월일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의 사본이**

<p>...</p> <p>5. 세계신기록 수립이 발생한 국가의 회원연맹은 공식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를 발송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프로그램 인쇄물 - 해당 종목의 모든 기록 - 사진판정용 및 “0”점 조절사진 (규칙 제260조 22항(c) 참조) <p style="text-align: center;">[항목 세부구성 및 새로운 항목 추가]</p> <p>...</p> <p>18. 로드레이스 종목을 제외한 공통사항:</p> <p>(a) [적용되는 규칙 조항 명시하여 내용 간소화]</p> <p>...</p> <p>(d) 규칙 제147조에 의거하여 진행된 필드종목을 제외하고, 남녀 혼합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은 공인되지 않는다. [본 (d) 조항의 내용은 본 규칙 1항으로 옮기고 새로운 조항 삽입]</p> <p>...</p> <p>(d) 투척경기에서 사용되는 용구는 규칙 제123조에 따라 경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경기 중에 타이기록 또는 신기록갱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즉각 사용된 용구에 표시하여 규칙에 부합되는지 또는 용구의 특징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사하고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용구는 경기 종료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p> <p>...</p> <p>(a) 코스는 반드시 1명 또는 그 이상의 IAAF/AIMS “A”급 또는 “B”급 공인계측원이 계측하여야 한다. [내용 추가]</p> <p>(b) 주회코스는 1주회 거리가 1km이상에서 2km이하가 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스타트와 피니시는 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p> <p>(c) 코스를 최초로 계측한 코스계측원 또는 완전한 계측자료와 지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A”급 또는 “B”급 계측원은 계측한 코스가 동일한 코스임을 확인해주어야</p>	<p>기존 신청서(세계기록 공인 신청서)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선수 또는 선수의 회원연맹이 지체 없이 이를 구비하여 IAAF에 제출해야 한다.</p> <p>(d) 릴레이 종목의 경우, 릴레이 팀원들은 반드시 규칙 제5조 1항에 준수하여 단일한 회원연맹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어야 한다. IAAF에 단독 회원연맹으로 가맹되지 않은 식민지는 본 규칙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모국의 일부로 간주된다.</p> <p>...</p> <p>7. 세계신기록 수립이 발생한 국가의 회원연맹은 공식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첨부서류를 발송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대회프로그램 인쇄물 (또는 전자판으로) (b) 해당 종목의 모든 기록 (본 규칙 하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 포함) (c) 완전자동계시로 운영되었을 때 트랙경기 기록이 세워진 경우, 사진판정용사진 (photo finish) 및 “0”점 조절사진(zero control test images) (d) 본 규칙 하 제출이 요구되는 기타 모든 정보 <p>...</p> <p>12. 로드레이스 종목을 제외한 공통사항:</p> <p>(a) 기록은 규칙 제140조 또는 제149조 2항을 준수하는 IAAF 공인육상경기시설이나 기타 경기 장소에서 수립되어야 한다.</p> <p>...</p> <p>(d) 실외 트랙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은 규칙 제160조에 준하는 트랙에서 수립된 기록에 한한다.</p> <p>17. 필드경기 종목의 세계기록 :</p> <p>...</p> <p>(d) 투척경기에서 사용되는 용구는 규칙 제123조에 따라 경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경기 중에 세계기록 동(Tie)기록 또는 갱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즉각 사용된 용구에 이를 표시하고 규칙에 부합되는지와 용구의 특징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사하고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용구는 규칙 제123조에 준하여 경기 종료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p> <p>20. 로드경보경기의 세계기록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코스는 반드시 IAAF/AIMS “A”급 또는 “B”급 공인계측원이 계측하여야 한다. 공인계측원은 IAAF에서 요청할 시에 관련된 계측보고서와 본 규칙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b) 주회코스는 1주회 거리가 1km이상에서 2km이하가 되어야하며 가능하면 스타트와 피니시는 경기장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c) 코스를 최초로 계측한 코스계측원, 또는 계측원이 임명하였으며 공식 계측된 코스에 대한 상세한 서류를 소지하고 자격이 있는 기타 임원은 선수들이 경기
--	---

한다. **[내용 보완]**

- (d) 되도록이면 코스를 최초로 계측한 계측원 중 다른 “A”급 계측원이 경기 당일에 임박하여 또는 경기 당일 또는 레이스 전 코스를 확인(재계측)한다.

[주-IAAF] 만약 최소 두 명의 “A”급 또는 1명의 “A”급 및 1명의 “B”급 계측원이 최초로 코스를 계측하였고, 그 중 최소 1명이 규칙 제260조 29항(c)에 의거하여 코스 인증을 위해 경기 현장에 있다면, 본 규칙 제260조 29항(d)에 따르는 확인은 필수적이지 않다.

- (c) 로드경보경기의 코스 구간 간에 달성된 세계기록은 반드시 규칙 제260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간 거리는 반드시 코스 계측 동안 계측되고 마킹되어야 하며, 규칙 제260조 29항(d)에 부합되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

- (a) 코스는 반드시 1명 또는 그 이상의 IAAF/AIMS “A”급 또는 “B”급 코스계측원에 의해 계측되어야 한다.

- (b) 코스의 스타트 지점과 피니시 지점간의 이론적 직선거리를 따라 측정된 거리는 전체 레이스 거리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c) 스타트와 피니시 지점 사이 고도의 전체 감소는 평균 1000분의 1(0.1%, 즉 1km 당 1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d) 코스를 최초로 계측한 코스계측원 또는 완전한 코스 계측 자료 및 지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A”급 혹은 “B”급 계측원이 선두 차량에 타고 계측한 코스가 실제로 선수들이 달린 코스라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내용 보완]**

- (c) 코스는 최초로 코스를 계측한 계측원이 아닌 다른 “A”급 계측원에 의해 가능한 레이스 바로 전, 레이스 당일 또는 레이스 종료 후 즉시 확인되어야 한다(즉, 재계측 하여야 한다).

[주-IAAF] 만약 최소 2명의 “A”급 계측원이나 “A”급 계측원 1명과 “B”급 계측원 1명이 함께 최초 코스계측을 하였고, 그 중 최소 1명이 규칙 제260조 28항(d)에 의거하여 레이스 현장에 있으면서 코스 인증을 한다면, 규칙 제260조 28항(c)에서 요구하는 계측원에 의한 확인 재계측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다.

- (f) 레이스 중 구간거리에서 세운 로드레이스 세계기록은 규칙 제260조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간거리는 코스 계측 시에 계측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규칙 제260조 28항(c)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 (g) 로드릴레이레이스는 레이스가 5km, 10km, 5km, 10km, 5km, 7.195km 구간으로

동안 실제로 사용한 코스가 공식계측원에 의해서 계측되고 문서화된 코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d) 코스는 최초로 코스를 계측한 계측원이 아닌 다른 “A”급 계측원에 의해 가능한 레이스 바로 전, 레이스 당일 또는 레이스 종료 후 즉시 확인되어야 한다(즉, 재계측 하여야 한다).

[주-IAAF] 만약 최소 2명의 “A”급 계측원이나 “A”급 계측원 1명과 “B”급 계측원 1명이 함께 최초 코스계측을 하였다면, 본 규칙 제260조 20항(e)에서 요구하는 계측원에 의한 확인(재계측)은 필요하지 않다.

- (c) 레이스 중 구간거리에서 세운 로드경보경기 세계기록은 규칙 제260조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간거리는 코스 계측 시에 계측의 일부분으로써 계측, 기록 및 추후 마킹되었어야 하며, 규칙 제260조 20항(e)에 준하여 확인되었어야 한다.

21. 로드러닝 종목의 세계기록 :

- (a) 코스는 반드시 IAAF/AIMS “A”급 또는 “B”급 공인계측원이 계측하여야 한다. 공인계측원은 IAAF에서 요청할 시에 관련된 계측보고서와 본 규칙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b) 코스의 스타트 지점과 피니시 지점간의 이론적 직선거리를 따라 측정된 거리는 전체 레이스 거리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c) 스타트와 피니시 지점 사이 고도의 전체 감소는 평균 1000분의 1(0.1%, 즉 1km 당 1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d) 코스를 최초로 계측한 코스계측원, 또는 계측원이 임명하였으며 공식 계측된 코스에 대한 상세한 서류를 소지하고 자격이 있는 기타 임원은 경기 동안 선두 차량에 탑승하여 선수들이 실제로 달린 코스가 공식계측원에 의해 계측되고 문서화된 코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c) 코스는 최초로 코스를 계측한 계측원이 아닌 다른 “A”급 계측원에 의해 가능한 레이스 바로 전, 레이스 당일 또는 레이스 종료 후 즉시 확인되어야 한다(즉, 재계측 하여야 한다).

[주-IAAF] 만약 최소 2명의 “A”급 계측원이나 “A”급 계측원 1명과 “B”급 계측원 1명이 함께 최초 코스계측을 하였다면, 본 규칙 제260조 21항(e)에서 요구하는 계측원에 의한 확인(재계측)은 필요하지 않다.

- (f) 레이스 중 구간거리에서 세운 로드러닝종목의 세계기록은 규칙 제260조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간거리는 코스 계측 시에 계측의 일부분으로써 계측, 기록 및 추후 마킹되었어야 하며, 규칙 제260조 21항(e)에 준하여 확인되었어야 한다.

- (g) 로드릴레이는 레이스가 5km, 10km, 5km, 10km, 5km, 7.195km 구간으로 진행되어야

진행되어야 한다. 코스계측 시, 각 구간의 거리는 ±1%에 허용오차로 계측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규칙 제260조 28항(e)에 따라 확인되어야 한다.

한다. 각 구간의 거리는 ±1%의 허용오차로 **코스 계측 시에 계측의 일부분으로써 계측 기록 및 추후 마킹되었어야 하며, 규칙 제260조 21항(e)에 준하여 확인되었어야 한다.**

...
한국기록(Korean Records)
 ...

제261조
세계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World Records are Recognised)

제261조
세계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World Records are Recognised)

...

...

남 자(46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 경기

-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200mR, 4×400mR,
10종경기
-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4×1500mR
경보경기(트랙) : 20,000m, 30,000m, 50,000m
-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45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 경기

-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200mR, 4×400mR,

남 자(47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200mR, 4×400mR,
10종경기
-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디스턴스메들리릴레이, 4×1500mR
경보경기(트랙) : 20,000m, 30,000m, 50,000m
-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48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p>7종경기, 10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4×1500mR 경보경기(트랙) : 10,000m, 20,000m</p> <p>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p> <p>{여자 로드레이스 세계기록은 2가지이다 - -남녀혼합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세계기록 -여자단일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세계기록}</p> <p>[주-IAAF] 경보경기를 제외하고 IAAF는 여자 로드레이스에 2가지의 세계기록을 인정한다.</p> <p>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p>	<p>4×100mR, 4×200mR, 4×400mR, 7종경기, 10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디스턴스메들리릴레이, 4×1500mR; 경보경기(트랙) : 10,000m, 20,000m; 50,000m*</p> <p>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p> <p>* 최초 기록 공인은 2015년 12월 31일 예정.</p> <p>[주1-IAAF] 경보경기를 제외하고, IAAF는 여자 로드레이스에 2가지의 세계기록을 인정한다 : 남녀혼합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세계기록(“혼합”), 여자단일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세계기록(“여자단일”)</p> <p>[주2-IAAF] 여자경기와 남자경기의 스타트타임을 각각 다르게 정해서 여자단일로드레이스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히 동일한 코스의 일부가 2 주회 이상 연결되는 코스의 경우) 조력, 페이스 도움이나 방해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스타트타임의 시간차를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p> <p>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p>
<p style="text-align: center;">제265조 한국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Korean Records are Recognis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자동 계시 기록(F.A.T.) - 수동계시기록(H.T.) - 자동무선계시기록(T.T.) <p>남 자(26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400mR, 10종경기</p>	<p style="text-align: center;">제265조 한국기록 공인 종목 (Events for which Korean Records are Recognise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자동계시기록(F.A.T.) - 수동계시기록(H.T.) - 자동무선계시기록(T.T.) <p>남 자(48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p>

F.A.T. or H.T. : 1,5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하프마라톤, 마라톤,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25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400mR, 7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하프마라톤, 마라톤,

경보경기(로드) : 2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4×100mR, ~~4×200mR~~, 4×400mR,

10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디스턴스메들리릴레이~~, ~~4×1500mR~~

경보경기(트랙) : 10,000m, ~~20,000m~~, ~~30,000m~~, ~~50,000m~~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 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여 자(48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200mR~~, 4×400mR,

7종경기, ~~10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디스턴스메들리릴레이~~,

~~4×1500mR~~

경보경기(트랙) : 10,000m, ~~20,000m~~, ~~50,000m*~~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 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주1-IAAF] 경보경기를 제외하고, IAAF는 여자 로드레이스에 2가지의 한국기록을 인정한다 : 남녀혼합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한국기록(“혼합”), 여자단일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한국기록(“여자단일”)

[주2-IAAF] 여자경기와 남자경기의 스타트타임을 각각 다르게 정해서 여자단일 로드레이스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히 동일한 코스의 일부가 2 주회 이상 연결되는 코스의 경우) 조력, 페이스 도움이나 방해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스타트타임의 시간차를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

	<p>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p>
<p>2. 한국대학기록공인종목 남 자(26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400mR, 10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하프마라톤, 마라톤,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p> <p>여 자(25종목) 트랙, 혼성, 경보, 로드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400mR, 7종경기 F.A.T. or H.T. : 1,500m, 5,000m, 10,000m, 3,000mSC 경보경기(트랙) : 10,000m F.A.T. or H.T. or T.T : 로드레이스 : 하프마라톤, 마라톤, 경보경기(로드) : 2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p>	<p>2. 한국대학기록공인종목 남 자(48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10mH, 400mH, 4×100mR, 4×200mR, 4×400mR, 10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디스턴스메들리릴레이, 4×1500mR 경보경기(트랙) : 10,000m, 20,000m, 30,000m, 50,000m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 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 도약경기 :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세단뛰기 투척경기 :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p> <p>여 자(48종목) 러닝, 혼성, 경보 경기 F.A.T. only : 100m, 200m, 400m, 800m, 100mH, 400mH, 4×100mR, 4×200mR, 4×400mR, 7종경기, 10종경기 F.A.T. or H.T. : 1,000m, 1,500m, 1마일, 2,000m, 3,000m, 5,000m, 10,000m, 20,000m, 1시간, 25,000m, 30,000m, 3,000mSC, 4×800mR, 디스턴스메들리릴레이, 4×1500mR, 경보경기(트랙) : 10,000m, 20,000m, 50,000m* F.A.T. or H.T.or T.T. : 로드레이스 : 10km, 15km, 20km 하프마라톤, 25km, 30km 마라톤, 100km 로드릴레이(마라톤거리만) 경보경기(로드) : 20km; 50km*</p>

[주1-IAAF] 경보경기를 제외하고, IAAF는 여자 로드레이스에 2가지의 한국대학기록을 인정한다 : 남녀혼합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한국대학기록(“혼합”), 여자단일경기에서 수립된 기록의 한국대학기록(“여자단일”)

[주2-IAAF] 여자경기와 남자경기의 스타트타임을 각각 다르게 정해서 여자단일 로드레이스를 진행할 수도 있다. (특히 동일한 코스의 일부가 2 주회 이상 연결되는 코스의 경우) 조력, 페이스 도움이나 방해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스타트타입의 시간차를 적절히 설정해야 한다.